

# 먹는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

의안 번호	50
----------	----

제안년월일 : 1995. 11. 4

제안자 : 교육사회위원장

## 1. 주 문

먹는물은 공익성이 매우 큼에도 지하수의 경우 개인이 이를 개발, 생수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많은 부작용이 야기되고 있어 지하수도 상수도처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이를 먹는물로 개발 생산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주기 바람.

## 2. 제안이유

-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개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먹는물을 생산 판매함에 따라 많은 문제점과 부작용이 발생
- 개인의 먹는물 생산판매는 비교적 비싼 값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주민부담의 과중과 지하수 폐공처리 부실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우려
-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에 따른 수원고갈 등으로 인근 주민과의 마찰 및 집단민원 야기

## 3. 참고사항

별첨 "건의(안)"

## 먹는물 관리법 개정 건의(안)

본격적인 지방자치가 시작되고, 명실공히 지방이 주체가 되는 지방화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치 제도상 민주화가 정착되어 가고 있는 역사적 전환점에서 국민의 생활환경 개선과 국민민복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국회의장, 환경부장관, 국무총리님께 온 도민과 더불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옛부터 우리나라는 산자수려하며 물이 맑아 삼천리 금수강산으로 불리워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 개인의 이기주의로 산천은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고, 폐공처리 부실로 급기야는 지하수까지 오염되고 있으며, 개발의 남발로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 국민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먹는물 제조업체들은 개인영리에 치중하고 있으며, 휘발류 가격보다도 비싸게 판매하여 국민에게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으면 개인도 먹는물의 수원개발이나 제조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를 지방자치단체에서만 개발, 생산 판매토록 하여 계획적인 개발로 지하수 자원보전을 철저히 하고, 상수도외 같이 저렴하게 공급하여 국민의 식수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하고

한편 법 개정애 따른 업체허가 관리에 있어 기허가된 업체는 일정기간 기득권을 보호하되 그 기간이 지난 후에는 자치단체와 공동출자 경영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 생활향상을 기할 수 있도록 「먹는물 관리법」을 전면 개정하여 줄것을 바랍니다.

시대 변화에 따른 민주화 물결속에 국민생활의 편익을 위하여 자원을 존중하고 계시지만 국민생활에 없어서는 안될 물이 무분별한 개발과 사후처리 부실로 오염되어 국민 보건위생을 위협하고 있고 전 국토가 수질오염으로 멍들고 있다는 점을 고찰하시어

본 건의사항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선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 11. 9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